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4. 6 선고 2021나306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4. 6 선고 2021나3061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가단15427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기복

변론 종결2022. 3. 16.

판결 선고2022. 4. 6.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가단15427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9. 9. 17. 체결된 확정채권양도계약을 4,055,06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55,0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제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C의 무자력 여부

1) C의 채무초과 상태 갑 제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 및 I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게 61,020,470원, J 주식회사에 26,952,000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L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었고 다른 채무자들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무자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2018. 1.부터 2018. 11.까지 L으로부터 매월 약 6,500,000원에서 약 14,770,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있던 사실, C은 2013. 2. 22. M으로부터 지급금액 250,000,000원, 지급기일 2014. 8. 22.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사실, C은 2019. 4. 11. N에게 변제기를 2019. 9. 20., 같은 해 10. 20., 같은 해 11. 20.로 하여 22,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을 제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C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C의 수수료 수령내역은 2018. 1.부터 2018. 11.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내역에 불과하고, 피고는 C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인 2019. 9.경에도 이와 동일한 정도의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C은 현재까지도 M, N으로부터 위 약속어음 및 대여금 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각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채권을 C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③ C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2019. 9. 17. 당시 채무가 70,000,000원 정도 있었으나 위 채권들을 제외한 다른 재산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2056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던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자신의 일반재산을 감소하게 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생기게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2017년 또는 2018년부터 피고에게서 수시로 돈을 빌려왔고 특히 2018. 2. 한 달에만 13,5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C과 피고의 금전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는 평소 C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② C은 2019. 9. 17. 당시 피고에게 약 3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데, 피고는 2019. 7.경에도 C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적이 있었던 점, ③ 피고는 2018년경부터 C과 C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대화를 수시로 나누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C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으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주식회사 G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4,055,065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해야 한다.

한편, 앞에서 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피고가 배당받은 배당금 액수보다 다액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4,055,06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4,055,0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창열

판사주철현

판사정경수

별지